

빅웨이브(BigWave) 정관

2019년 3월 9일

빅웨이브(BigWave) 정관

제1장 [총칙]

제1조 [명칭]

본 단체의 국문명은 '빅웨이브' 이다. 영문명은 'BigWave' 이다.

제2조 [목적]

본 단체(이하 빅웨이브)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연결하여 논(論)하고 행(行)하는 것이다.

제3조 [사업]

빅웨이브는 제2조 [목적]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
2. 국내외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개인 및 단체 간 교류 활성화
3.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역량 개발 및 공유
4.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활동 및 관련 활동 촉진
5. 그 외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

제4조 [소재지]

빅웨이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, 필요에 따라 국내·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2장 [회원]

제5조 [회원의 정의]

- ① 빅웨이브의 회원은 자발적인 의사로 회원 등록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운영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자를 말한다.
- ② 빅웨이브의 회원은 대표와 운영위원을 포함한다.
- ③ 회원은 본조 제1항의 신청·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회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

제6조 [회원의 모집]

- ① 회원 모집은 연중 1~2회 진행한다.
- ② 회원 모집 기간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.
- ③ 회원 모집은 회원 모집 기간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7일 이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공지한다.
- ④ 회원 모집은 가입 희망자가 서면 상 혹은 온라인 상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.
- ⑤ 그 밖에 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로 정한다.

제7조 [등록]

- 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모집된 회원은 회원명부에 등록된다.
- ②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은 제3장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.
- ③ 회원명부는 제5장 제2절의 운영위원이 관리한다.

제2장 [회원의 권리 및 의무]

제8조 [회원의 권리]

- ①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 1. 총회에서의 선거권, 피선거권
 2.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
 3. 활동 및 사업을 제안할 권리
- ② 단, 제1항 제2호의 참여할 권리는 일부 활동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

제9조 [회원의 의무]

- 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- ② 회원은 빅웨이브의 활동에 있어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.
- ③ 회원은 빅웨이브의 존속 및 회원 간의 화합을 지킬 의무를 진다.

제10조 [회원의 탈퇴와 제명]

-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퇴한 것으로 한다.
 1.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
 2.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할 때

- ② 회원이 빅웨이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,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명을 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[총회]

제11조 [총회의 지위]

- ① 총회는 빅웨이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빅웨이브 운영 및 사업 보고
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3. 대표의 선출 및 해임
 4. 운영회의로의 위임 사항
 5. 빅웨이브의 해산
 6.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
- ③ 총회의 의결은 다른 조항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표결로 한다. 단 의결권은 위임할 있다.

제12조 [소집]

- ① 총회는 운영위원회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 개회한다.
- ② 전항의 총회가 있을 때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확정하고 이를 총회 7일전에 회원들에게 알리고 소집을 요청한다. 다만, 총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③ 총회의 개최날짜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정한다.

제5장 [임원]

제1절 [대표]

제13조 [대표의 지위와 책무]

- ① 대표는 대외적으로 빅웨이브를 대표한다.
- ② 대표는 빅웨이브의 운영·존속·화합을 독려·발전시킬 성실한 책무를 진다.
- ③ 대표는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
제14조 [대표의 권한]

- ① 대표는 단체의 운영 및 사무를 총괄하고,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.
- ② 대표는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및 주관하고, 운영회의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총괄한다.
- ③ 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, 행사, 기타의 중요한 사안을 이유로 총회 소집령을 발할 수 있다.

제15조 [대표의 선출]

- ① 대표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② 대표 후보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③ 대표는 총회에서 참가인원의 절반의 찬성을 받아 취임한다.
- ④ 부득이한 경우 회원의 추천을 받고, 운영위원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운영위원이 아닌 자를 대표 후보로 결정할 수 있다.

제16조 [임기]

- ①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.
- ② 대표의 연임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. 단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의 만장일치를 통하여 정한다.

제17조 [대표의 권한 대행]

대표가 궐위·사고 또는 합당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임시 대표를 뽑고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제18조 [해임]

- ①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.
 1. 단체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
 2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3.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4. 현저한 직무 태만 행위
- ② 제1항의 해임은 3분의 2 이상의 회원 발의 및 총회 의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표 해임의 결정은 회원 과반수의 총회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의 표결로 한다.

제2절 [운영위원]

제19조 [운영위원의 역할 및 책무]

- ① 운영위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- ② 운영위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한다.
- ③ 운영위원은 다양한 프로젝트의 행정적, 기술적,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.
-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의 결과에 따라 신규 운영위원의 구성·지명·임명권을 갖는다.
- ⑤ 운영위원은 상황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한다.
- ⑥ 운영위원의 역할과 업무는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.

제20조 [운영위원의 업무]

운영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1.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
2. 빅웨이브 및 프로젝트 홍보
3. 회의 결과 및 운영위원 활동 정리
4. 예산 관리
5. 기타 그 외에 필요한 업무

제21조 [운영위원회의]

- ① 대표는 빅웨이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, 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에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단체의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 2. 예산의 편성 및 결산
 3. 회원 가입 승인 및 제명
 4. 신규 운영위원의 구성·지명·임명
 5. 대표 궐위 시 권한대행 선출
 6.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항

제22조 [운영회의]

- ① 운영위원은 빅웨이브의 사업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회의를 개최한다.
- ② 빅웨이브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회원은 운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- ③ 운영회의에선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.
 - 1. 사업의 기획 및 지원
 - 2. 사업의 추진사항 보고 및 지원·조정
 - 3. 기타 사업 관련 중요 사항

제23조 [운영위원의 구성 및 선출]

- ① 운영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.
- ② 신규 운영위원은 빅웨이브의 활동을 기획 및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회원 중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의 표결로 결정한다.

제24조 [운영위원의 임기]

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
제25조 [운영위원의 해임]

-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.
 - 1. 단체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
 - 2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- 3.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- 4. 현저한 직무 태만 행위
- ② 제1항의 해임은 회원 건의 및 운영위원회의를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.

제26조 [운영위원의 사임]

- ① 운영위원은 임기 중 사임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로 정한다.

제6장 [예산]

제27조 [예산]

- ① 빅웨이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조직이 관리한다.
- ② 제1항의 조직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

쳐 총회에 보고한다.

- ③ 제1항의 조직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7장 [정관의 개정]

제28조 [발의]

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또는 현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.

제29조 [의결 및 확정]

- ① 제안된 정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심의한다.
- ② 정관 개정은 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. 참석이 불가한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30조 [인준 및 공포] 대표는 확정된 정관을 즉시 인준·공포한다.

제8장 [기타]

제31조 [정관에 미비된 사항]

- ①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.
- ② 정관에 미비된 사항에 의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해가 지나기 전까지 이를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.

[부칙]<2017.3.1.>

제1조 [시행일]

이 정관은 2017년도 3월 1일부로 시행되며 적용된다.(2017.3.1.)

[부칙]<2019.3.9.>

제1조 [시행일]

제1차 개정 정관은 2019년도 3월 9일부로 시행되며 적용된다.(2019.3.9.)